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098

제출년월일: 2016년 4월 7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학대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,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 '서울특별시학대 피해아동 쉼터'를 우영할 예정이며.

나. 해당 분야의 전문성, 노하우,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,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 설 명 : 학대피해아동 쉼터

○ 소 재 지 : 서울 관악구 00동

※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자 함

○ 시설규모 : 119,73m²

○ 공간구성 : 침실, 거실, 주방, 화장실 등

○ 위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나,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8개월 (2016.5.1 ~ 2018.12.31)
- 주요 위탁사무
 -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 - 피해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
 - 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심리치료, 집단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
- 교육 및 정서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
다.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

-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·사회·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,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 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
-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육, 상담치료, 교육 및 정서 지원 등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어려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아동복지법
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
○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제12조(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)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조치(이하 "응급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3.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

○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

제11조(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· 운영 등)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 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 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예산 편성 및 2017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안호준 (☎2133-5180)